2020년도 제5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

2020년도 제5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▢ 회의일시 : 2020. 10. 23(금) 14:00~14:50

▢ 회의장소 : 양재 플래그원 1317호

▢ 심의결과

1. 규칙개정안건
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차기 위원회 심의	부결
1건	-	1건	-	-	-

2. 일반의결안건 · 보고안건

일반의결안건					보고안건	
안건수	원안 가결	수정 가결	심의 보류	부 결	안건수	원안 접수
1건	1건	-	-	-	2건	2건

붙 임 : 1.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2. 보고사항 결과

2020. 10. 23.

위원장	한국전력거래소	조영탁
위 원	산업통상자원부	이옥헌(대참)
	숭실대학교	송경빈
	서울과학기술대학교	유승훈
	법무법인 화우	류병채
	한국전력거래소	조강욱(불참)
	한국전력공사	박형덕(대참)
	한국동서발전	이승현
	GS EPS	이재덕

한송희/20201026140532
12748005041603688721

【붙임 1】

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

안건명 : 규칙개정실무협의회 위원 선임(안)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제5차 규칙개정위원회</td><td colspan="2">제안번호 : 제2020-5-1호</td></tr>
<tr><td>개최일시</td><td colspan="3">2020년 10월 23일 14:00</td></tr>
<tr><td>제 안 자</td><td colspan="3">전력거래소</td></tr>
<tr><td>제안내용</td><td colspan="3">☐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 변경
<table>
<tr><td rowspan="2">구 분</td><td colspan="2">변경 전</td><td colspan="2">변경 후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>소속 및 직책</td><td>성 명</td><td>소속 및 직책</td></tr>
<tr><td>회원대표</td><td>김태용</td><td>한국전력공사
송변전운영처장</td><td>신근호</td><td>한국전력공사
송변전운영처장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주요
토의내용</td><td colspan="3">☐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
o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동의함</td></tr>
</table>

심의 결과 : 원안가결

2020년 10월 23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서명)

환송희/20201026140532
1274800504160368721

안건명 : Fast DR (주파수 수요반응자원) 운영을 위한 규칙개정(안)

제5차 규칙개정위원회	제안번호 : 제2020-5-2호
개최일시	2020년 10월 23일 14:00
제 안 자	전력거래소

제안내용

☐ Fast DR 제도 신설

구분	항목	세부내용
운영	대상	주파수 하락 시 즉시 감축응동 가능한 개별부하 (기존DR 참여않는 고객도 가능)
	운영기간	원칙적으로 초기등록기간(12월~다음해 11월)만 운영, ('20년만 한시적 초기전력기간 운영기간 확대: '20년 11월 ~ '21년 11월) ('21년만 한시적 추가전력거래기간 운영, '21년 3월 ~ '21년 11월)
	발령요건	취득 주파수 59.85Hz 이하 하락 시, 연중 상시운영 (365일 9~18시)
	감축방법	주파수 하락 시 즉시 감축 후 10분 지속
	계량기	최소 1분 단위 형식승인 계량기
	실적평가	감축직전 10분간 사용량 대비 감축직후 10분간 사용량 차이 개별평가
정산	기본급	없음
	실적급	회차별 2,600~1,040원/kW-10min 차등 (5,200원의 50%. 30% 20%~) -59.85Hz초과~59.88Hz이하 동작시 520원/kW-10min 수준 보상
	운전유지비	연간 미발령시 연간 최대 사용량 실적 기준 520원/kW-y 수준 보상
	위약금	거래제한 및 위약금 없음

주요 토의내용

☐ 전체위원 수정가결 찬성

○ 참석위원 전원이 본 규칙개정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찬성함

현 행	개 정 (안)
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	**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**
제1절 통칙	**제1절 통칙**
제12.1.1조(용어의 정의)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9. <신설>	**제12.1.1조(용어의 정의)**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9. "감축예상용량"이라 함은 주파수 수요반응자원별 등록신청 직전 1개월 09시~18시 사이의 1시간 단위 평균 사용전력량(kW)을 말한다.
제12.2.2조(수요반응자원의 등록) ⑤ <신설>	**제12.2.2조(수요반응자원의 등록)** ⑤ 전력거래소는 "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"의 필요용량을 등록신청기간 전 별도로 공지하고, 주파수 수요반응자원 감축예상용량의 합이 필요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
제12.2.3조(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) ② (본문생략) 3. -중략- 다만, 주파수DR에 등록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력량계는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으로 차단되는 부하의 사용전력량만 계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	**제12.2.3조(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)** ② (본문생략) 3. -중략- 다만, 주파수 수요반응자원에 등록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력량계는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부하의 사용전력량만 계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심의 결과 : 수정가결

2020년 10월 23일

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조 영 탁 (서명)

한송희/20201026140532

12748005041603688721

【붙임 2】

보고사항 결과

보 고 내 용	보 고 결 과
▪ (제1호) 규칙개정위원회 위원 변경사항 보고 ▪ (제2호) 전차(제20-4차) 규칙개정위원회 결과보고	○ 원안 접수

판송희/20201026140532
12748005041603688721